



공지사향

공고 및 고시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62호

대외무역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공정수출입행위중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5월 16일

통상산업부장관

지적재산권관련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공정수출입행위중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기준】 ①이 고시는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중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행위의 조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지적재산권의 권리내용·제한 등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무역업자 등이 수입한 물품을 최초로 유통시키기 전에 한 행위는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본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국내 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 또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영업비밀 등 모든 형태의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2. “불공정수출입행위”라 함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불공정한 수출·수입행위를 말한다.

제 4 조【상표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수출·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제5조【병행수입에 대한 예외】 국내 및 국외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3자가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원산지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한 상품을 수출·수입하여 원산지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7조【출처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출·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제8조【국기·국장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없이 사용한 상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2.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의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없이 사용한 상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9조【의장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10조【포장·용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의 용기·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수출·수입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제11조【특허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2. 특허가 물품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12조【실용신안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 13 조【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제 14 조【프로그램저작권】 타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제 15 조【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타인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하는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제 16 조【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영업비밀을 사용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제 17 조【품질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과장표시한 물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한 상품을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 18 조【등록표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불공정수출입행위로 본다.

1. 특허된 것이 아니거나 특허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용기나 포장 등에 특허표시, 특허출원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2. 실용신안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실용신안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용기나 포장 등에 실용신안등록표시, 실용신안출원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3. 의장등록된 것이 아니거나 의장등록출원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용기나 포장 등에 의장등록표시, 의장등록출원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4.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상표등록출원중이 아닌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 또는 그 포장 등에 표시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5.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배치설계에 의하여 제조된 반도체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집적회로의 포장 등에 허위의 등록표시를 하여 수출·수입하는 행위

제 19 조【적용 범조항】 이 고시에 따른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범조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 제1호, 제9조,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는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는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제4조 제2호, 제6조 제2호,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수출입행위는 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